

수강생 행동 규범

1. 제정 목적

본 규범은 LA한국교육원(한미교육재단)이 운영하는 「뿌리교육」 및 「성인평생교육」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강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 대상

본 규범은 「뿌리교육」 및 「성인평생교육」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수강생에게 적용한다.

3. 기본 원칙

수강생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여야 하며,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4. 준수 사항

가. 수업 참여의 성실 의무

- (1) 수강생은 정해진 교육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- (2) 지각, 조퇴,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강사 또는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나. 학습 질서 및 교육 환경 유지

- (1) 강의 진행을 방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2) 강사 및 타 수강생에게 상호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교육 목적과 무관한 소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다. 상호 존중 및 차별 금지

- (1) 성별, 인종, 국적, 종교, 장애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2) 폭언, 폭행, 괴롭힘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라.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책임

- (1) 교육 시설 및 기자재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
마.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의무

- (1) 수업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, 이용,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2) 강의 자료 및 교육 콘텐츠를 사전 승인 없이 복제, 배포,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바. 온라인 교육 운영 수칙 준수

- (1) 계정 공유, 강의 녹화, 화면 캡처 등은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없다.
- (2) 온라인 공간에서 비방, 허위사실 유포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사. 법령 및 사회 규범 준수

- (1) 음주, 흡연, 불법 약물 사용 등 법령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2) 기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5. 위반 시 조치

- (1) 경미한 위반 사항은 구두 경고 조치한다.
- (2)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서면 경고 또는 수강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3) 교육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다.
- (4) 필요시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6. 시행

본 규범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